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5. 6

총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5. 1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3. 5. 1
- 라. 상정일자 : 2003. 5. 6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가. 개정이유

- 읍면동기능전환 및 민선3기의 안정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사무를 조정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되
- 업무의 연속과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소규모생활민원 처리, 항만개발지원 업무에 역점을 두어 일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총무국의 “자치행정과” 를 “총무과” 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과” 를 신설함(안 제5조제1항).
-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통계 및 소규모생활민원에 관한사항” 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11호).
- 건설도시국의 “항만개발지원에 관한사항” 을 신설함(안 제6조2 제2항제7호)
-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 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민선3기의 안정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여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소규모 생활민원의 처리와 항만개발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하고자 기구 및 사무를 조정 하려는 것임.
-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총무국의 자치행정과를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총무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복지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키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며

- 총무국의 분장사무중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통계 및 소규모 생활민원에 관한사항 신설과 건설도시국에 대산항 개발에 따른 항만정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항만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 또한 개정 조례안 제7조제3항에 영농현장 지도활동을 위한 읍면동 농업인 사랑방 설치를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등을 종합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49호
의 결 년 월 일	2003. . . (제 회)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3년 7월 / 일

#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년월일 : 2003. 1- / .

제출자 : 서산시장

## 개정이유

- 읍면동기능전환 및 민선3기의 안정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사무를 조정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되
- 업무의 연속과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소규모생활민원 처리, 향만개발지원 업무에 역점을 두어 일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총무국의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과”를 신설함 (안 제5조 제1항)
-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통계 및 소규모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제2항 제11호)
- 건설도시국의 “향만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2 제2항 제7호)
-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 제3항)

##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10조

○ 충청남도 행정 13101-3011(2002. 12. 04)

-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정원 승인 통보

○ 읍면동기능전환 및 민선3기 시정추진을 위한 기구·인력조정 계획  
행정12000-1182(2003.4.11)

##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및 주민자치과를 둔다.

제5조 제2항중 제5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새마을에 관한 사항
- 8. 민원·호적에 관한 사항
- 11. 주민자치, 통계 및 생활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 2 제2항중 제7호 내지 제9호를 제8호 내지 10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항만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다만, 센터의 소관사무중 영농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상담 등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농업인 상담소를 둘 경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서산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제4항과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2조, 제13조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등의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제1호의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⑥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중 “총무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①총무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및 종합민원과를 둔다.</p> <p>② (생략)</p> <p>1. 내지 4.(생략)</p> <p>5. <u>새마을 및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에 관한 사항</u></p> <p>6. 내지 7.(생략)</p> <p>8. <u>민원·호적·병무 및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u></p> <p>9. 내지 10.(생략)</p> <p>&lt;신설&gt;</p> <p>11. (생략)</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①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및 주민자치과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내지 4. (현행과 같음)</p> <p>5. <u>새마을에 관한 사항</u></p> <p>6. 내지 7.(현행과 같음)</p> <p>8. <u>민원·호적에 관한 사항</u></p> <p>9. 내지 10. (현행과 같음)</p> <p>11. <u>주민자치, 통계 및 생활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u></p> <p>12.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①(생략)</p> <p>②(생략)</p> <p>1. 내지 6.(생략)</p> <p>&lt;신설&gt;</p> <p>7. 내지 9.(생략)</p>	<p>제6조의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 내지 6.(현행과 같음)</p> <p>7. <u>함안개발지원에 관한 사항</u></p> <p>8. 내지 10.(현행과 같음)</p>
<p>제7조(설치)①~②(생략)</p> <p>&lt;신설&gt;</p>	<p>제7조(설치)①~②(현행과 같음)</p> <p>③다만, 센터의 소관사무중 영농기술 지도 및 애로사항 상담 등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농업인 상담소를 들 경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

(다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서산시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 ①~③ (생략) ④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보전산담당관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u>자치행정과</u>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⑥(생략)</p>	<p>서산시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u>총무과</u> 장----- ⑤~⑥(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인대장) <u>자치행정과</u>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7조(공인대장) <u>총무과</u>장----- ----- ----- -----</p>
<p>제8조(인영의 보존) <u>자치행정과</u>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p>	<p>제8조(인영의 보존) <u>총무과</u>장----- ----- -----</p>
<p>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재 교부, 교부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u>자치행정과</u>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인의 폐기) ①----- ----- -----<u>총무과</u>장----- -----</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③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 표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총무과장-----</p> <p>-----</p> <p>-----</p> <p>-----</p>
<p>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p> <p>-----</p> <p>-----</p> <p>-----</p> <p>-----</p> <p>총무과장-----</p>
<p>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계장이 읍·면·동에 있어서는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p>	<p>제13조(공인의 관수자)-----</p> <p>----- 총무과장-----</p> <p>----- 담당-----</p> <p>----- 총무담당 또는 주무가-----</p> <p>-----</p> <p>-----</p>
<p>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7조(간사, 서기) ①(생략)</p> <p>②간사는 총무국장이,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p>	<p>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7조(간사, 서기) ①(현행과 같음)</p> <p>②----- 총무과장-----</p>

현행	개정안
<p>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②(생략). ③(생략) 1. 총무담당간사 : <u>자치행정과장</u> 2.~3.(생략)</p>	<p>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총무담당간사 : <u>총무과장</u> 2.~3.(현행과 같음)</p>
<p>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생략) ②(생략) 1. <u>자치행정과장</u> 2.~7(생략) ③(생략)</p>	<p>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u>총무과장</u> 2.~7(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이용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u>행정지원국장</u>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된다.</p>	<p>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이용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건설도시국장</u>----- -----</p>
<p>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등) ①(생략) 1. 기금운용관 : <u>총무국장</u> 2. (생략) ②(생략)</p>	<p>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u>건설도시국장</u>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